

## 자금집행계획서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과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의 자금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채무자는 대출금 사용완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와 대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중 빠른날까지 공단에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증빙자료(통장계좌 출금내역 사본, 세금계산서, 영수증, 계좌이체확인증 등)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.
- 채무자는 공단이 추가·보완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.
- 채무자는 제1호, 제2호와 관련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자료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- 자금집행계획과 달리 용도외로 사용(붙임 참조)시에는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제4조에 따라 대출금 회수, 신규대출 취급제한, 채권보전 등을 위한 법적절차 진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- 다 음 -

자금용도	소요금액(백만원)	자금집행예정시기	비고
합계			

\* 자금용도는 원재료구입, 외주가공비, 인건비, 판매관리비, 기타경비(구체적 내용 기재)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, 자금집행 예정시기는 실제 자금투입이 예상되는 일자를 기재합니다.

년 월 일

채무자 : (인, 서명)

약정인 : (인, 서명)

약정인 : (인, 서명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